



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

[시행 2022. 1. 13.] [규칙 제4461호, 2022. 1. 13., 타법개정]

서울특별시(재난대응과), 02-3706-1413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이륜자동차의 관리, 승차소방공무원의 근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7.2.23>

[전문개정 2009.8.6]

제2조(적용) 소방이륜자동차(이하 "이륜차"라 한다)의 관리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17.2.23>

[전문개정 2009.8.6]

제3조(배치 등) ① 이륜차는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(이하 "소방관서"라 한다)에 각각 1대 이상 배치한다.

② 이륜차 1대의 승차 소방공무원(이하 "승차원"이라 한다)은 2명 이하로 하고 승차원은 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운영책임자(이하 "운영관"이라 한다)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.<개정 2014.5.22, 2017.2.23>

③ 소방서의 경우 이륜차 운영관은 대응총괄팀장으로 하고, 119안전센터의 경우는 119안전센터장으로 한다.<개정 2017.2.23>

[전문개정 2009.8.6]

제4조(임무) ① 이륜차 승차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순찰 또는 119안전센터 근무 중 화재발생시 선발대로 현장출동 초동조치
2. 출동 소방차량 유도 및 화재상황 전파
3. 화재 취약대상 및 취약지역의 방화순찰
4. 소방용수시설(비상소화장치 포함) 및 지리조사
5.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단속 및 제거
6. 그 밖에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

② 관내에 지정문화재가 있는 소방서장은 이륜차 문화재 화재대응기동대를 편성·운영하여야 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화재발생시 현장에 선발 출동하여 출동대에게 신속히 현장상황 정보 송신
2. 자위소방대와 협력하여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초동조치 활동

[전문개정 2009.8.6]

제5조(근무) ① 소방관서의 장은 관내 소방업무 수요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승차원을 지정하는 등 이륜차의 분기별 근무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5.22, 2017.2.23>

- ② 이륜차 승차원은 운영관의 일일 근무지정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.
- ③ 이륜차 승차원은 근무시작 10분 전에 운영관의 참관 하에 전일 근무자의 취급사항, 중요업무 지시사항 등을 인계·인수하여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2.23, 2022.1.13>
- ④ 운영관은 근무 교대시 승차원의 용모·복장 및 휴대품 점검과 필요한 업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⑤ 이륜차 승차원은 근무시간 중 무전기를 항상 개방하여 송·수신이 가능토록 하고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즉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또는 소속 소방서상황실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.<개정 2014.5.22>
- ⑥ 이륜차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방이륜차 운행일지를 비치하고 근무 중 처리한 사항을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2.23>
- ⑦ 그 밖의 근무요령은 근무 종류별로 소방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8.6]

제6조(순찰노선 및 회수) ① 소방관서의 장은 관내 소방여건 및 이륜차 대수 등을 감안하여 순찰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5.22>

- ② 순찰회수는 10일 간격 월 3회 이상으로 하며, 소방비상근무 등 화재특별경계 근무시에는 1일 1회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현장상황을 감안하여 소방관서의 장이 순찰회수를 가감할 수 있다.
- ③ 삭제 <2014.5.22>
[전문개정 2009.8.6]

제7조(운행 중 금지사항) 이륜차 승차원은 운행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개정 2017.2.23>

1. 임의운행 행위 또는 타인의 대리운전 행위
 2. 운행 중 흡연·음주행위 및 정원 외 승차 행위
 3.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관할구역 밖의 운행
 4. 화재 및 긴급사태 외의 사이렌 취명행위
 5. 그 밖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행위
- [전문개정 2009.8.6]

제8조(복장) 이륜차 승차원은 「소방공무원 복제 규칙」의 기동복과 기동화 및 별도의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소방관서의 장이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다른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14.5.22>

[전문개정 2009.8.6]

제9조(기종 및 도장) ① 이륜차의 기종은 배기량 124cc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전기이륜자동차로 한다.

- ② 이륜차의 도장과 표지는 별도와 같다.
[전문개정 2009.8.6]

제10조(휴대장비 및 부착물) 이륜차의 휴대장비 및 부착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화기 2대, 응급처치 구급약품, 구조장비, 진압장비
2. 휴대용 무전기1대, 업무수행상 필요한 개인장구
3. 경광등, 사이렌

[전문개정 2009.8.6]

제11조(점검 및 정비) 이륜차의 정비는 예방점검과 위탁정비로 구분하되, 그 정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7.2.23>

1. 예방점검

가. 일일점검 : 1일 2회(장비 점검 시)

나. 주간점검 : 주 1회(매주 목요일)

다. 월간점검 : 월 1회(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)

라. 이륜차의 예방점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운영관의 감독 하에 승차원이 실시한다.

2. 위탁정비 : 자체정비가 불가능하다고 소방관서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반 정비업체에 위탁·정비

[전문개정 2009.8.6]

제12조(교육) ① 소방관서의 장은 이륜차 승차원의 직무수행 능력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운영관이 월 1회 이상, 대응관리과장 또는 현장지휘대장이 분기 1회 이상, 소방서장이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.

③ 제4조제2항의 문화재 화재대응기동대를 운영하는 소방서장은 현지출동훈련을 비롯한 문화재 관련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신설 2009.8.6, 2017.2.23>

[전문개정 2009.8.6]

제13조(지휘감독) 이륜차 승차원에 대한 1차 감독자는 운영관, 2차 감독자는 대응관리과장 또는 현장지휘대장으로 하고, 소방서장은 총 지휘책임을 진다.

[전문개정 2009.8.6]

부칙 (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) <제4461호, 2022.1.13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